

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견 심사보고서

2004. 9. 13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9월 1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8회(임시회) 제3차 행정위원회(2004.9.16.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사유
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사업구역이 법정동 2개동(영등포동, 신길동)과 행정동(영등포1동, 신길2동)의 경계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,
-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 내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신길동(신길2동) 27필지 1,359㎡ ⇒ 영등포동(영등포1동)으로 편입
- 재건축지역 현황
 - 사업명 :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
 - 위치 :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 27필지
 - 토지면적 : 13,541㎡
 - 건축규모 : 아파트 건물 4개동 (지하2층, 지상 15층)
 - 입주예정일 : 2004. 9월경
 - 대상지역 현황 - 별첨

3. 조정의 필요성
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전체면적 13,541㎡중 영등포동(영등포1동)지역이 12,182㎡(89.98%), 신길동(신길2동)지역이 1,359㎡(10.04%)으로서,
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에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경계변경을 신청하였고, 재개발 사업구역이 2개의 법정동,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경계조정이 필요

4. 우리 구 의견

-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2개의 법정동, 행정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되,
-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측에서 동 경계변경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조합원 총회의의결 사항과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통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 신길동 27필지 1,359㎡을 영등포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(안)이 타당하다 사료됨.

5. 심사결과 : 의견 없음.

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견

(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)

의안 번호	1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14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사업구역이 법정동 2개동(영등포동, 신길동)과 행정동(영등포1동, 신길2동)의 경계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,
- 주민생활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 내 경계조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신길동(신길2동) 27필지 1,359㎡ ⇒ 영등포동(영등포1동)으로 편입
- 재건축지역 현황
 - 사업명 :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
 - 위치 : 영등포동 577번지 일대 27필지
 - 토지면적 : 13,541㎡
 - 건축규모 : 아파트 건물 4개동 (지하2층, 지상 15층)
 - 입주예정일 : 2004. 9월경
 - 대상지역 현황 - 별첨

3. 조정의 필요성
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전체면적 13,541㎡중 영등포동(영등포1동)지역이 12,182㎡(89.98%), 신길동(신길2동)지역이 1,359㎡(10.04%)으로서,
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에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경계변경을 신청하였고, 재개발 사업구역이 2개의 법정동,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경계조정이 필요

4. 추진 경위

- 2004. 3. 21 동 경계변경신청서 제출(재개발조합 → 구)
- 2004. 3. 26 경계조정대상지역 관련동 의견제출 시달 (구 → 동)
- 2004. 4. 10 경계조정대상지역 관련동 의견 제출(동 → 구)
- 2004. 6. 30 경계변경 추진계획 수립
- 2004. 6. 30 서울시 경계변경 사전협의(시 → 구)
- 2004. 7. 8 사전협의결과 승인통보(시 → 구)
- 신길동 27필지(1,359㎡) ⇒ 영등포동 편입

5. 우리 구 의견

-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2개의 법정동, 행정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되,
-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측에서 동 경계변경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조합원 총회의결 사항과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통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

-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내 신길동 27필지 1,359㎡을 영등포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(안)이 타당하다 사료됨.

(별첨)

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

대상지역 현황

(2004. 6. 30. 현재)

동 명		현 계			조 정			조정후		
행정동	법정동	면적 (㎡)	세대	인구	면적 (㎡)	세대	인구	면적 (㎡)	세대	인구
영등포1동	영등포동	608,056	5,715	15,622	+ 1,359	-	-	609,415	5,715	15,622
신길2동	신길동	302,002	4,579	11,179	- 1,359	-	-	300,643	4,579	11,179

※ 면적, 세대, 인구수는 행정동 기준임.

지번별 조서

현재의 행정구역명			지번	지목	총면적 (㎡)	이동면적 (㎡)	비 고
시군구	읍면동	리	188-1	대	23.0	23.0	
서울시	신길동		188-242	대	20.0	20.0	
			188-243	대	33.0	33.0	
"	"		188-244	대	40.0	40.0	
			188-245	대	53.0	53.0	
			188-246	대	23.0	23.0	
			188-247	대	79.0	79.0	
"	"		188-249	대	43.0	43.0	
			188-250	대	76.0	76.0	
			188-251	대	15.0	15.0	
			188-252	대	13.0	13.0	
"	"		188-253	대	13.0	13.0	
			188-254	대	7.0	7.0	
			188-255	대	13.0	13.0	
"	"		188-256	대	13.0	13.0	
			188-257	대	13.0	13.0	
			188-258	대	7.0	7.0	
"	"		188-259	대	109.0	109.0	
			188-260	대	46.0	46.0	
			188-261	대	46.0	46.0	
			188-262	대	155.0	155.0	
"	"		188-264	대	7.0	7.0	
			188-265	대	30.0	30.0	
			188-266	대	119.0	119.0	
			188-499	대	2.0	2.0	
			188-502	도로	237.0	237.0	
"	"		188-503	도로	124.0	124.0	
총 계					1,359.00	1,359.00	